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개정(2020. 7. 30. 시행, 2021. 1. 30. 일부시행)에 따라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가차원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에, ‘함께 보고하고, 함께 보호받는’ 올바른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 1. 환자안전사고 보고 안내 1부.
2.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절차 안내 1부. 끝.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수신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협회장, 대한영양사협회장, 대한요양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장, 대한중소병원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가나다순

팀원 **손민지** 팀장 **백현지** 부장 **서희정** 센터장 **구홍모** 전결 06/27

협조자

시행 중앙환자안전센터-1014 (2022.06.27.) 접수 ()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0(여의도동) / <https://www.koiha.or.kr/>
전화 02-2076-0638 전송 / mjson@koiha.or.kr / 공개
청렴으로 국민 신뢰 인증으로 환자 안전